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53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이강일 · 박홍배 · 김문수
백혜련 · 김남희 · 민병덕
박상혁 · 정진욱 · 김남근
이재관 · 김현정 · 송재봉
황운하 · 이인영 · 조계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

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해물품”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위해물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위해물품의 유통 방지 등)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위해물품의 노출 차단·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의4제1항”을 “제20조의6제1항,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위해물품”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말한다.</u></p>
<p>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p> <p>· ② (생략)</p> <p><u><신설></u></p>	<p>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u>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의 6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위해물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u></p>
<p>③ · ④ (생략)</p> <p>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신 설>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제20조의6(위해물품의 유통 방지

- 등)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위해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
 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해물품
 이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중대
 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판
 매중개자에게 해당 위해물품의
 노출 차단·판매 중단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의 구축·운영 기
 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구
 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신설>

④ ~ ⑧ (생략)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11. 제2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
르지 아니한 자

④ ~ ⑧ (현행과 같음)